

기흥4구역 드림랜드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의 행위제한 지형도면 고시

용인시 고시 제2021-138호와 관련하여,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정비예정구역(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116-2 외1)에 대하여 행위를 제한하고자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행위제한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3. 12. 22.

용 인 시 장

1. 제한지역

구역명	단지명	위 치	면 적(m ²)	제한기간
기흥4	드림랜드아파트	신갈동 116-2 외 1 (구갈동388-3)	10,169	고시일로부터 3년

※ 단, 제한기간 이내라도 정비계획 결정 고시된 경우, 고시일 다음 날 자동해제.

2. 제한사유

-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의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분할로 인한 투기행위 유입을 방지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함.

3. 제한 대상 행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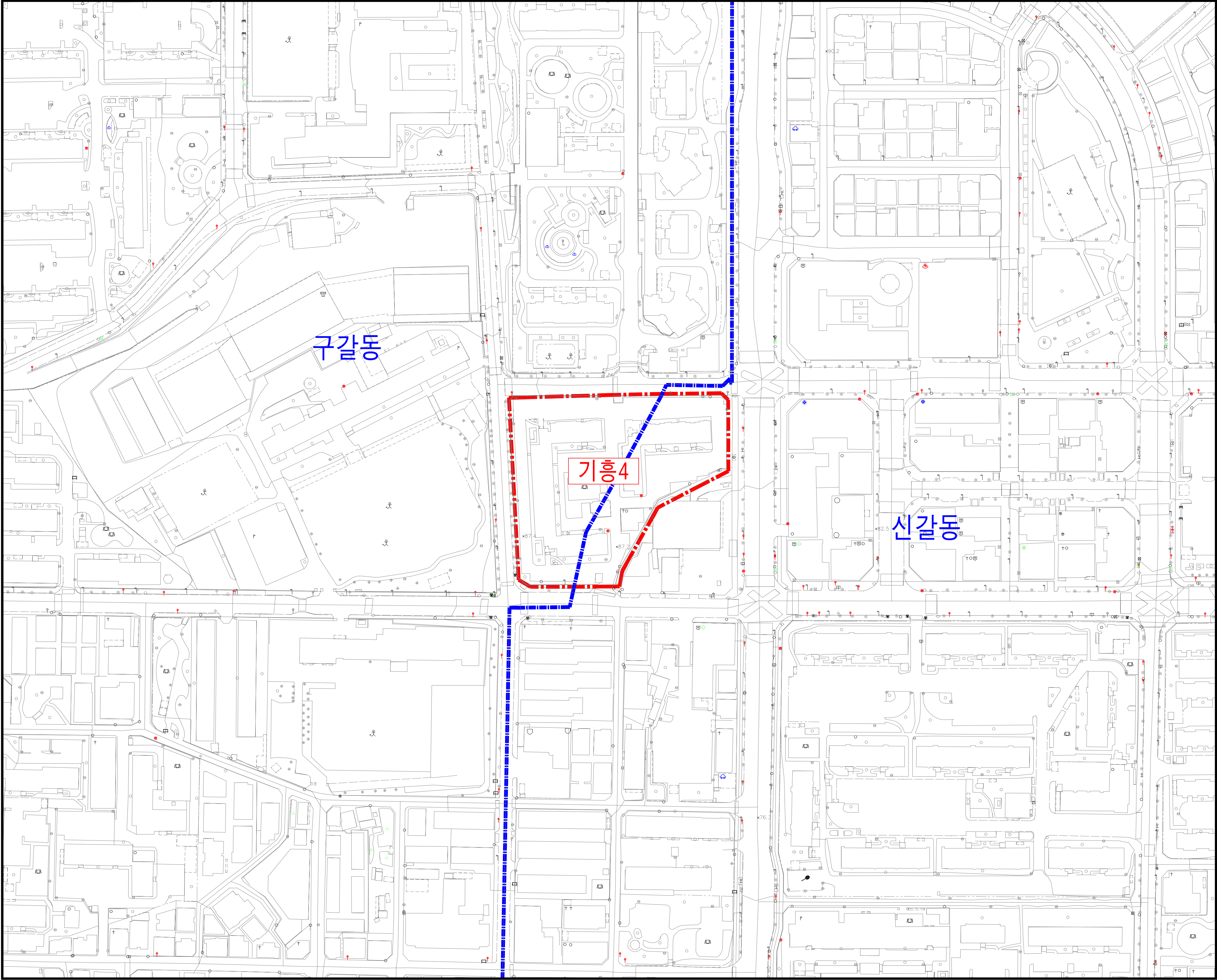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제7항 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
(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금지 포함)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제7항 제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

4. 행위제한 지역은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, 용인시청 도시재생과에 지형도면 및 조서를 비치합니다.

5. 기타 사항은 용인시 도시재생과(☎031-324-329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SCALE = 1 : 1,200

도엽번호 1



재건축정비예정구역
행위제한지역

지형도면고시도

범 레 (Legend)

-  대 상 지
-  동 경 계

※ 금회 변경에 한함

용 인 시 고 시 제2023 - 737호
서 기 2023년 12월 23일

